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,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,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거리실차율: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말하고, 현재 거리실차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현재 거리실차율} = \left(\text{개인택시의 거리실차율} \times \frac{\text{개인택시 보유대수}}{\text{전체택시 보유대수}} \right) + \left(\text{일반택시의 거리실차율} \times \frac{\text{일반택시 보유대수}}{\text{전체택시 보유대수}} \right)$$

다. 시간실차율: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비율을 말하고, 현재 시간실차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총 운행시간 조사의 부정확 등으로 시간실차율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호의 계산식에서 시간실차율을 생략하고, 거리실차율에 적용하는 가중치 0.8을 1.0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$$\text{현재 시간실차율} = \left(\text{개인택시의 시간실차율} \times \frac{\text{개인택시 보유대수}}{\text{전체택시 보유대수}} \right) + \left(\text{일반택시의 시간실차율} \times \frac{\text{일반택시 보유대수}}{\text{전체택시 보유대수}} \right)$$

라. 가동률: 전체 택시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의 대수를 말하고, 현재 가동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1) 현재 가동률

$$\text{현재 가동률} = \frac{\text{실제 운행대수}}{\text{전체 택시 보유대수}} \times 100$$

2)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부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부제에 따라 현재 가동률을 산정하고, 안정적 가동률로 나눈 값을 보유대수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며,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.

$$\frac{\text{현재 가동률}}{\text{안정적 가동률}} = \left(\frac{\text{개인택시 현재 가동률}}{\text{개인택시 안정적 가동률}} \times \frac{\text{개인택시 보유대수}}{\text{전체 택시 보유대수}} \right) + \left(\frac{\text{일반택시 현재 가동률}}{\text{일반택시 안정적 가동률}} \times \frac{\text{일반택시 보유대수}}{\text{전체 택시 보유대수}} \right)$$

마. 목표 거리실차율,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은 택시운송 사업자의 적정수입과 이용객 수요 등 택시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757